

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(의안번호 제17호 2001. 4. 23)

총 무 위 원 회
2001. 5. 4(금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1. 4. 23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1. 4. 23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1. 5. 3 제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(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장정갑)

가. 제안이유

조례의 목적내용 중 관련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일부를 수정·정비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조례의 목적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 관련조항 삭제(안 제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성호영)

-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상 설치목적에 불필요한 법률근거를 삭제하므로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